##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2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김교흥・모경종・허종식

이훈기 • 박선원 • 이용우

노종면 • 유동수 • 정일영

문진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등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6번째이며, 강화·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등).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거점대학으로"를 "거점대학 및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로 한다.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종전의 제34조)제1항 중 "제33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1조(의과대학 설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둔다.

제32조(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학비 등"이라 한다)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학비 등의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의무복무)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

다.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2. 인천광역시장이 공공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정하는 기관
- ②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의무복무 기관의 배치・변경 및 복무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지원금의 반환) ① 제32조에 따라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한다.
  - 1.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 2.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3.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지원금의 반환 절차, 반환금액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교육·실습기관)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의료원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실습기관으로 한다.
  -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 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2. 그 밖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과대학의 설치를 위하여 학생 모집공고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
|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       | 재정지원 등) ①             |
| 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        |                       |
| 쟁력을 갖춘 <u>거점대학으로</u> 육 | <u>거점대학 및 지역</u>      |
| 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 <u>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u> |
|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                       |
| 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      |                       |
| 다.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제31조(의과대학 설치) 국립대학    |
|                        | 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
|                        | <u>둔다.</u>            |
| <u>&lt;신 설&gt;</u>     | 제32조(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지    |
|                        | 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
|                        |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        |
|                        | 대하여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     |
|                        | 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      |
|                        | 하 "학비 등"이라 한다) 전액을    |
|                        | <u>지원하여야 한다.</u>      |
|                        | ② 학비 등의 지원절차 및 지      |
|                        | 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
|                        | 통령령으로 정한다.            |
| <u>&lt;신 설&gt;</u>     | 제33조(의무복무) ① 국립대학법    |

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이하"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
- 2. 인천광역시장이 공공보건의 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정하는 기관
- ②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업

   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신 설>

#### 소집된 경우

-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 자격이 정지된 경우
-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의무복무 기관의 배치·변 경 및 복무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지원금의 반환) ① 제32조 에 따라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 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오
  - 2.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경우
  - 3.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 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지원금의 반환 절차, 반환금 액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교육·실습기관) ① 「지 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 의료원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실습기 관으로 한다.
  -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신 설>

제31조(부설학교 등) (생 략)

- <u>제32조</u>(「민법」의 준용) (생략)
- <u>제33조</u>(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략)
- 제34조(과태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 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 ② (생략)

의과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 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
- 2. 그 밖에 국립대학법인 인천 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실 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 료기관
- <u>제36조</u>(부설학교 등) (현행 제31 조와 같음)
- <u>제37조(「민법」의</u> 준용) (현행 제32조와 같음)
- <u>제38조(유</u>사명칭의 사용금지) (현 행 제33조와 같음)

| <u>제39조</u> (과태료) ① |  |
|---------------------|--|
|---------------------|--|

| - | <br>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 | _ | _ | - | - | · ス | <u>: </u>  ; | 38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_\_\_\_

\_\_\_\_\_

\_\_\_\_\_

-----.

② (현행과 같음)